



보험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아래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①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② 모질청사자 및 아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④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담보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한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은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슬산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여가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에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통번(전문적인 통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벌,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시운전(다만, 항공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정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 특약을 통해 장애인전환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금청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암시 치료자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인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지필서명 또는 날인 도장인용을 하지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금이송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대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의 청구제도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청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청약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 철회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의 반환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①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② 청약일부 30일 초과
③ 보험기간 보장기간 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9 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보험공공사 ☎ 1588 0037, www.kdc.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당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 3000 www.hanain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1332, www.fss.or.kr
모질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질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1332,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1332, www.fss.or.kr

※ 은행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대리점입니다.
※ 은행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모바일전용상품

골프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 위한 현명한 선택 골퍼들을 위한 즐거운 라운딩 하나골프보험 (방카)



딱! 필요한 보장만 하나로 하나골프보험(방카)

골프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프 중 배상책임, 홀인원 비용

- 가입나이 : 만 19세~80세
- 가입플랜 : 1게임(1인), 1게임(4인), 1개월(1인)플랜
- 납입방법 : 일시납



이럴때 추천드려요!

가볍게
출발 전 가입!

1게임(18홀) 플랜
2,000원

4인 기준
(동반인 플랜)

1게임(18홀) 플랜
5,640원

갈 때마다
보험가입 번거롭다면?

1개월 플랜
8,690원

보장내용	가입플랜	
	1게임(1인)	1게임(4인)
골프 중 상해후유장애(1회당)	1억원	1억원
골프 중 배상책임(1회당)	2천만원	2천만원
홀인원 비용(1회당)	8십만원	8십만원
보험료	2,000원	5,640원
	1개월(1인)	
골프 중 상해사망	1억원	
골프 중 상해후유장애	1억원	
골프 중 배상책임	2천만원	
홀인원비용(보험기간 중 1회)	1백만원	
보험료	8,690원	

※ 피보험자가 골프 선수, 지도자 혹은 골프장 관련 종사자일 경우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홀인원 보장의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갈때기 홀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계약별 비례보상 됩니다. ※ 국내소재 18홀 이상을 보유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담보별 보험료 예시

<기준: 1개월(1인)플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담보별보험료(원)
골프중 상해사망	100,000,000	47
골프중 상해후유장애	100,000,000	47
골프중 배상책임	20,000,000	119
홀인원비용(보험기간 중 1회) 특별약관	1,000,000	8,477
총 보험료		8,690원

※ 원단위 절사로 인해 담보별 합계 보험료와 실제 납입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상세

<기준: 1개월(1인)플랜>

보장내용	지급사유	가입금액(원)
골프중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100,000,000
골프중 상해후유장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상해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 (3%~100%:가입금액X지급률)	100,000,000
골프중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발생된 보험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약관에서 정한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20,000,000
홀인원비용 (보험기간 중 1회)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발생한 비용(중정용 기념품 구입, 축하회, 골프장 기념식수, 동반 캐디 축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1,000,000

※ 위 보장내용 상세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가입담보, 가입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보장내용은 본 상품의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이며,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골프장 :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한 국내에 소재한 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파크골프(나무로 만든 골프채 1개와 정규골프볼보다 큰 플라스틱 볼을 사용하는 경기), 그라운드골프(골프채로 지면 위에 공을 굴리거나 쳐서 홀에 넣는 경기) 및 이와 유사한 경기를 위한 골프장은 제외합니다.

※ 골프경기 :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사용하고, 동반경기가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PAR) 35이상의 9홀을 정규로 라운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 책임개시 이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 국내 소재 18홀 이상을 보유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 배상책임, 홀인원비용은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을 경우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자(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 동반인은 계약자 포함 4인입니다. ※ 가입 시 유의사항의 내용은 동반인 4인 모두 적용됩니다

■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이 효력이 상실(무효 등)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귀책사유	환급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 잔액